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시행 2020. 1. 16.] [환경부예규 제666호, 2020. 1. 16., 일부개정]



환경부(화학안전과), 044 - 201 - 6832

제1장 총괄

1. 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유해화학물질 수입자 및 영업자 관리, 시약 판매업 신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유역(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적용함

제2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시약 판매업 신고

1. 관련규정

가. 법 제1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9조

나.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43조까지, 제53조

2. 허가 대상 유해화학물질 영업

가.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이하 “제조업”이라 한다.

※ 유해화학물질 또는 비유해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인 제품을 생산할 경우

※ 유해화학물질을 희석하거나(고체를 액체로 만드는 행위 포함), 농축, 여과·정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제조업 허가 대상, 유해화학물질을 소분하거나, 단순히 용기만 교환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판매업 허가 대상

나.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판매를 알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판매업”이라 한다.

다.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이하 “보관·저장업”이라 한다.

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이하 “운반업”이라 한다.

마.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이하 “사용업”이라 한다.

※ 유해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다만, 법 제29조, 시행규칙 제31조 및 환경부 고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상기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면제

3. 영업허가기관

가. 다음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이하 “지방환경관서”라 한다)에서 허가

- (1) 제조업 : 유해화학물질 제조시설 소재지
- (2) 판매업 :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 소재지(별도의 보관·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주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판매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 (3) 보관·저장업 :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 소재지
- (4)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차고지 또는 차량등록지
- (5) 사용업 : 유해화학물질 사용시설 소재지

예1) 서울에 본사가 있으며 대전, 전주, 부산 등에 지점을 두고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경우 : 본사를 비롯한 각 판매지점은 각 지역별 관할기관에서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의 특례

- (1)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제조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허가 이외 별도의 판매업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단,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제조한 유해화학물질을 지점 등을 통해 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은 별도의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직접 제조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함
- (2) 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판매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저장업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3) 보관·저장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탁 보관·저장중인 유해화학물질을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4) 사용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 보관·저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반업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4.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신청 서류 및 타법 검토

가. 제출서류

- (1) 허가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 (2) 첨부서류
 - (가)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1부
 - (나) 적합판정을 받은 취급시설 검사결과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1부
 - (다)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사고대비물질을 법 시행규칙 [별표10]에 따른 기준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1부
 - (라)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및 물질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1부
 - (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명세서(시설별 면적(m^2) 및 용량(m^3),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기재)
 - (바) 유해화학물질 장비·기술인력 명세서 1부
 - (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또는 그 사본(유해화학물질 운반업만 첨부) 1부

(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①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②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③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신청서류 검토

(1)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수수료 납부 확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를 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서 직접 확인

(3) 후견등기부

(4)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및 타법검토의 적합여부는 결과확인

(5) 취급시설 검사결과서의 적합여부 확인

(6)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여부 결과확인

(7)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물질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종류별로 필요한 사항을 기재)의 적정여부 검토

(8) 유해화학물질 장비·기술인력 명세서가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검토

(9) 타법검토

(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도법」, 「농어촌정비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여부,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허가 여부, 건축물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류 여부 등을 소관 부처(부서)부서로부터 확인.

(나)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이 장외영향평가서 검토단계에서 확인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도법」, 「농어촌정비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은 확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1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 적정 가입 여부 확인(「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한함)

5. 현지확인 및 미비사항 보완

가. ‘영업허가서 및 구비서류’에 기재된 취급시설,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안전관리 담당조직, 주민 소
산계획 등 확인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영업허가 요건확인이 가능한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운반업 등은 현지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나.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결과 허가에 필요한 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추
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및 반려 등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다.

6.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교부

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교부

(1) 다음의 방식으로 허가번호를 부여

			-						

↓

↓

↓

↓

기관별 고유번호

업종별 고유번호

허가년도 끝2자리수

일련번호

- | | |
|-----------|------------|
| 10 : 한강청 | 1 : 제조업 |
| 20 : 낙동강청 | 2 : 판매업 |
| 30 : 금강청 | 3 : 보관·저장업 |
| 40 : 영산강청 | 4 : 운반업 |
| 50 : 원주청 | 5 : 사용업 |
| 60 : 대구청 | |
| 70 : 전북청 | |

(2)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게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을 허가조건란에 기재

<허가조건 예시>

- 예1) 영업(신규·변경) 허가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적합통보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허가가 취소됨
- 적합통보 받은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 대신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기본요건을 충족하였다는
문서를 받은 경우에 한함

예2) 제한물질의 경우 제한내용을 기록

- 폼알데하이드(06-5-5)의 경우 : 가구용 무늬목, 직물, 3세 이하 유아용제품, 도배용 풀, 피혁가
공 유연제의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3) 취급시설 현황에는 취급시설 번호 또는 명칭, 용량, 유해화학물질명을 기재

(4) 허가증 뒤쪽의 ‘참고사항’란에 취급하는 제품명 또는 이를 구성하는 유해화학물질명, 취급량 및 중간생성
물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

<참고사항>

일자	내용			확인
'00.00.00 (허가일자 기재)	제품명 또는 물질명	유해화학물질 구분	연간취급예정량(톤)	(인)
	염화수소 (7647-01-0)	유독물질, 사고대비	12,000톤	
	폼알데하이드 (50-00-0)	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	5톤	
'00.00.00	1.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중간생성물에 관한 사항 - (내용) 공정 중간 생성물로 공정 내 소멸 - (생성물질) 산성불화알루미늄(CAS NO. 1341-49-7)[유독물질] - (생성공정 및 설비명)			(인)

나. 정보시스템에 허가내용 입력·관리

7.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가. 변경허가 대상

- (1) 업종별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 변경허가대상의 총 용량은 부피(m^3 , kl , l), 중량(톤, kg), 면적(m^2)별로 각각 구별하여 산정하고, 실내 보관시설은 부피(면적×높이)단위 기재
 - ※ 업종별로 기 허가받은 보관 및 저장시설의 총합을 기준으로 산정
- (2)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가
 - ※ 기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의 전체연간취급량을 기준으로 산정
- (3)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품목이 추가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의 변경을 의미하며, 동일 품목의 함량변화는 품목변경으로 보지 않음

[예시] 가성소다 70% → 가성소다 45% 의 경우 변경이 아님)

(나) 동일 고유번호 내 물질들 중 CAS 번호의 변경은 품목변경으로 보지 않음

[예시] 산화트리부틸주석(CAS no.: 56-35-9) → 수산화트리부틸주석(CAS no.: 1067-97-6)의 경우 변경이 아님

(다) 제조업 허가자가 유해화학물질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허가 대상임

(마) 기존시설에 대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적합받은 자로써,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 추가로 인해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의 장외영향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에 대한 안전원의 적합통보서를 첨부하여 제출

※ ‘장외영향범위’란 화학사고 발생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로 사업장 부지경계 밖의 영향거리를 말한다.

㉡ 기존시설에 대한 장외영향평가를 제출·적합받은 자로써,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 추가로 인해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의 장외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에는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에 대한 안전원의 검토결과서를 첨부하여 제출

[예시] A사업장에서 새로운 유해화학물질인 염산이 추가되었을 경우 변경된 취급시설별로 변경 전과 변경후의 영향범위(거리)를 비교하였을 때 기존시설보다 사업장 밖에 미치는 영향범위가 확대된 경우는 변경된 장외영향평가를 제출하고, 동일하거나 축소된 경우는 장외평가 정보 변경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항목 중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되어 장외영향범위가 확대된 경우

※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이란, ① 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 ②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 변경, ③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변경(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등에 의해 변경하려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량(일일취급량 또는 보관·저장량)이 환경부 고시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량기준(이하 ‘소량기준’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가)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장외 평가정보 변경 사유 중에서 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이라 함은 취급시설의 증설로 일일 취급량 또는 보관·저장량이 소량기준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증설규모가 소량기준 이상이거나, 종전에 없던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신설(소량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시1] 취급시설이 증설되어 암모니아의 일일취급량이 50kg(소량기준 미만)에서 120kg(소량기준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② 일일취급량 증가규모가 100kg(일일취급기준의 소량기준) 이상인 경우(110kg에서 210kg으로 증가한 경우)

[예시2] 저장시설이 증설되어 황산의 저장탱크용량이 2.5톤(소량기준 미만)에서 3.5톤(소량기준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② 저장탱크용량의 증가규모가 3톤(보관·저장량의 소량기준) 이상인 경우(4톤에서 8톤으로 증가한 경우)

⇒ 만일 황산수용액의 용량(m^3)을 알고 있다면 밀도(kg/m^3 또는 $100kg/l$)를 곱하여 소량기준과 비교

$$12m^3 \times \frac{1810kg}{m^3} = 21720kg = 21.7\text{톤} \quad \text{또는} \quad 12m^3 \times \frac{1.81kg}{l} \times \frac{1000l}{m^3} = 21720kg = 21.7\text{톤}$$

[예시 3] 기존 시설과는 배관 등으로 연결되지 않는 새로운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로써, 10톤 규모인 황산 저장탱크 옆에 배관으로 연결되지 않는 5톤 규모의 황산 저장탱크를 신설하는 경우 5톤 규모의 황산 저장탱크 누출로 인한 영향범위가 사업장 밖까지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됨(변경전은 시설이 없으므로 영향범위=0, 변경후는 5톤 규모의 영향범위) 다만, 10톤 규모의 황산 저장탱크와 5톤 규모의 황산 저장탱크가 배관 등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10톤 규모의 황산 저장탱크의 영향범위와 15톤 규모(10톤+5톤)의 황산 저장탱크의 영향범위를 비교하여 장외 영향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됨(변경전은 10톤 규모의 영향범위, 변경후는 15톤 규모의 영향범위)

(나) 장외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란,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되어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장외영향범위가 총괄영향범위를 벗어나거나, 해당 취급시설의 장외영향범위 내에 새로운 보호대상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 총괄영향범위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5항에 따라 작성한 사업장 전체 장외영향범위를 말하며, 최악의 조건과 대안의 조건에서 화재·폭발시 영향범위와 독성물질의 유출·누출시 영향범위로 각각 구분된다.

※ 보호대상이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에서 규정하는 보호대상을 말한다.

○ 다만,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사고대비물질인 경우에는 ① 변경하려는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장외영향범위가 확대되고 해당 사고대비물질의 취급량이 시행규칙 별표 10에서 정한 수량기준 이상이 되는 경우, ② 변경하려는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장외영향범위가 확대되어 법 제41조제1항제7호의 유·누출시 나리오 및 응급조치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사업장 부지경계로의 취급시설의 위치변경이란, 사고시나리오 원점에서 사업장부지경계까지의 최단거리가 감소된 경우(실내에서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실내공간의 크기 및 운영조건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제외) 또는 위치를 변경하려는 취급시설의 장외영향범위가 총괄영향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예시 1] A사의 기존 취급시설에서 사업장 부지경계선까지 거리중 가장 짧은 거리가 50m인 상태에서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어 부지경계까지의 최단거리가 50m 보다 감소된 경우는 '취급시설의 위치변경'에 해당함

[예시 2] B사의 기존 취급시설에서 저장탱크를 사업장 경계 외곽(최단거리 20m)에서 사업장 중심(최단거리 50m)으로 위치를 변경하더라도 해당 저장탱크의 장외영향범위가 총괄영향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는 '취급시설의 위치변경'에 해당함

(배)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란, 동일한 취급시설에서 ①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② 취급시설의 운전조건이 변경되어 종전에 제출한 장외영향평가서에 기록한 물질상태(기체, 액체, 고체)가 변경되는 경우(액체에서 고체로 변경된 경우는 제외), ③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이 종전에 제출한 장외영향평가서에 기록한 농도 또는 농도범위와 다르고 이로 인해 인화성 또는 급성독성이 새로 확인되거나 높아진 경우*를 말한다.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분류기준에서 인화성 또는 급성독성을 말하며, 해당 규정의 인화성 또는 급성독성의 구분에서 유해·위험성이 높아진 경우(구분 3에서 구분 2로 변경되는 경우 등)를 말한다.

○ 다만, 동일한 보관·저장·진열시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었더라도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라 유해·위험성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

※ 다만, 보관·저장시설의 운전온도 및 압력이 변경되는 경우(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시 해당) 취급시설의 영향범위가 사업장 밖으로 확대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 대상임

[예시1] 상온상압에서 운영되는 보관창고(보관시설)에 벤젠을 보관하다가 톨루엔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벤젠과 톨루엔은 모두 인화성 액체이므로 각 물질의 다음 정보를 먼저 확인 후 ①, ②, ③의 조건을 비교 → 비교결과 모두 만족하므로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함

- ① 위험등급(RF)의 비교 :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구한 RF값을 표1에서 찾으면 벤젠(1등급) → 톨루엔(1등급)이므로 “조건 1” 을 만족
 ② 폭발위험지수(HI)의 비교 :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구한 HI값을 표2에서 찾으면 벤젠(3등급) → 톨루엔(3등급)이므로 “조건 2” 를 만족
 ③ 인화성등급의 비교 : 표4에서 인화점을 비교하면 벤젠(7등급) → 톨루엔(6등급)이므로 “조건 3” 을 만족

물질명	LOC	M(분자량)	T(끓는점)	폭발범위	인화점
벤젠	2550	78	80°C	1.2% ~ 7.8%	-11.13°C
톨루엔	4520	92	111°C	1.1% ~ 7.1%	6°C

벤젠	톨루엔
$RF = \frac{LOC}{V} = \frac{2550}{V}$ $V = \frac{1.6 \times M^{0.67}}{(T+273)} = \frac{1.6 \times (78)^{0.67}}{(80+273)} = 0.084$ $RF = \frac{LOC}{V} = \frac{2550}{0.084} = 30357.14$	$RF = \frac{LOC}{V} = \frac{4520}{V}$ $V = \frac{1.6 \times M^{0.67}}{(T+273)} = \frac{1.6 \times (92)^{0.67}}{(111+273)} = 0.086$ $RF = \frac{LOC}{V} = \frac{4520}{0.086} = 52558.14$
$HI = \frac{UEL - LEL}{LEL} = \frac{7.8 - 1.2}{1.2} = 5.5$	$HI = \frac{UEL - LEL}{LEL} = \frac{7.1 - 1.1}{1.1} = 5.45$

[예시2] 상온 4기압에서 운영되는 저장탱크에 이산화염소를 저장하던 것을 사린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두 물질의 다음 정보를 확인 후, 각 물질의 위험등급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대상임
 ① 위험등급(RF)의 비교 :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구한 RF값을 표1에서 찾으면 이산화염소(1등급) → 사린(3등급)

물질명	LOC	M(분자량)	T(끓는점)
이산화염소	3.03	67.5	11°C
사린	0.0344	140.09	158°C

구분	이산화염소	사린
RF 계산 식	$RF = \frac{LOC}{V} = \frac{3.03}{V}$ $V = \frac{1.6 \times M^{0.67}}{(T+273)} = \frac{1.6 \times (67.5)^{0.67}}{(11+273)} = 0.095$ $RF = \frac{LOC}{V} = \frac{3.03}{0.095} = 32.9$	$RF = \frac{LOC}{V} = \frac{0.0344}{V}$ $V = \frac{1.6 \times M^{0.67}}{(T+273)} = \frac{1.6 \times (140)^{0.67}}{(158+273)} = 0.102$ $RF = \frac{LOC}{V} = \frac{0.0344}{0.102} = 0.337$

※ 세부사항은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의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동일여부 판단 기준 참조

- (5)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 : 영업 허가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을 말하며, 관할지역 외로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관할 지방환경관서에서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에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함(별도의 폐업 신고 및 신규허가 불필요)

나. 변경신고 대상

- (1)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사무실 소재지 변경은 취급시설없이 사무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

- (2)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항목 중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었으나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시범생산용인 경우(시범생산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가) 기존시설에 대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자로써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나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을 추가하여 시범생산하려는 경우, “시범생산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다만, 시범생산의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려는 경우 또는 시범생산 후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시범생산”이란, 기존시설의 공정조건이나 취급하는 물질 등을 변경하여 시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운전조건 조정을 위한 시운전 등은 시범생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새로운 취급시설을 설치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은 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시범생산에 해당하지 않으나, 시제품의 성능·품질 시험 등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 시제품 생산을 시범생산으로 인정

- (3)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항목 중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되었으나 장외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경우

※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이란, ① 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 ②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 변경, ③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변경(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등에 따라 변경하려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일일취급량 또는 보관·저장량)가 소량기준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가) 기존시설에 대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자로써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되었으나 변경하려는 취급시설의 장외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4호 및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6항에 따라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와 아래의 서류를 사업장의 총괄영향범위를 표시한 “장외영향범위구분도”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

- ① 사업장의 총괄영향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안전원의 확인을 받은 “장외영향범위구분도”에 변경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영향범위를 표시한 도면
- ②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배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4)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이 증가한 경우(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

다. 변경허가서 및 변경신고서 제출시기

(1)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

(2)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제2호마목의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

라. 제출서류

(1) 변경허가신청서 및 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업종별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증가 내역서, 시설위치도 및 신·구 비교도표,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 허가한 유해화학물질의 품목변경인 경우, 추가된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및 물질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소재지가 변경된 사업장에 대한 등기부 등본 등

㉣ 기술인력 변경시에는 해당 기술인력의 자격증, 재직·경력증명서, 교육 수료증 등

※ 대표자 변경신고 시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은 신고당시 변경된 대표자와 변경된 임원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2호), 시범생산계획서(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4호),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5호), 취급시설 검사결과서(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6호) 등

(4) 영업허가증 원본

※ 필요 시 현지확인을 통해 변경사항 확인

마. 신청서 및 신고서의 처리

(1) 별지 제45호서식의 변경허가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신고증 교부

※ 변경신고사항을 변경허가증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47호서식의 신고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예) 변경허가의 경우 변경허가증 뒤쪽에 변경사항 기재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00.00.00 (변경허가일자)	1. 보관·저장시설 총 용량 증가 [10톤→20톤]	
‘00.00.00 (변경신고 일자)	1. 기술인력(ㅇㅇㅇ 신고)	

(2) 허가대장 정리(정보시스템에 허가내용 입력·관리)

8.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 및 시약 판매업 변경신고

가.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

(1) 신고 대상

(가)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

※ 금지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함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 받은 자가 시약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 시약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 시약을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외 용도로 판매·사용 등 취급할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판매업, 사용업 등)를 받아야 함

※ 유해화학물질 시약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허가 대상이며, 시약 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2) 제출 서류

(가)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3서식

(나)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

(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시설별 면적(m²) 및 용량(m³),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은 자료를 말함)

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변경신고

(1) 대상

(가) 상호, 대표자 성명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나)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수가 법 제29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2) 변경신고서 제출시기

(가)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3) 제출 서류

(가) 변경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47의5호서식

(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 원본

※ 필요 시 현지확인을 통해 변경사항 확인

(3) 신고수리 기관: 영업허가기관 참고

다.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의 처리

(1) 별지 제47의4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 교부

(가) 다음의 방식으로 신고번호를 부여

			-						

↓

↓

↓

↓

기관별 고유번호

업종별 고유번호

허가년도 끝2자리수

일련번호

6 : 시약판매업

(2)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확인증 뒤쪽에 변경사항 기재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00.00.00 (변경신고일자)	1. 사업장 소재지 변경	

(3) 정보시스템에 시약 판매업 신고내역 정리

라.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시 고지내용 및 방법

(1) 고지 내용

- (가) 시험용 · 연구용 · 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 (나)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2) 고지 방법

- (가) 시약용기에 표시하거나 시약 정보 요약서 제공

※ 서면 또는 전자문서 고지시에는 시약 정보 요약서 첨부(별지 제47호의2서식)

- (나) 진열 · 보관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장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
- (다)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은 확인이 어려우므로 구매자가 쉽게 확인하도록 최초 연결시 팝업 또는 구매시 팝업 등으로 고지하여야 함

마. 기타 사항

- (1)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존
- (2) 시약 판매실적보고(다음년도 6월 30일까지)

- (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시스템 (<http://chemical.kcma.or.kr/>)을 통해 전산으로 제출

9. 민원처리기한 : 민원처리기한은 별표 1과 같음

제3장 제한물질의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1. 관련규정

가. 법 제20조

나.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2. 허가 및 신고 대상

가. 허가 및 신고 대상 : 제한물질 또는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

나. 면제 대상(시행령 제10조)

(1)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측정용으로 사용되는 표준가스를 포함한다.)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 시험·검사·연구용 시약을 사용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허가 면제이나,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수입허가 대상임

[시약의 범위] 다음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제한

- (목적성) 제품이나 포장지에 시약, 試藥, Reagent 등으로 명시(“For laboratory use only” “실험·연구용” 등으로 명시)
- (접근성) 시험·검사·연구를 목적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인원만이 취급하는 경우

(2) 연간 100kg 이하의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 동일한 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예정인 유독물질의 합이 100kg을 초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에 수입한 모든 유독물질을 포함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함

[예시] A사업장에서 유독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총 3회에 걸쳐 수입한 경우

- ① LDE-12K(제품명) Hydrogen chloride(유독물질) 35% 수입 (50kg, 1월) - 수입신고 면제
- ② AVF-69(제품명) Lead dioxide(유독물질) 30% 수입 (40kg, 5월) - 수입신고 면제
- ③ NANO-STRIPK(제품명) Sulfuric acid(유독물질) 수입 (50kg, 10월) - 수입신고 대상
- ※ ③번 유독물질 수입(10월) 전에 ①+②+③과 해당 연도내에 수입예정인 유독물질을 모두 포함하여 수입신고 하여야 함

3. 제출서류 및 검토

가. 제출서류

(1) 제한물질 수입허가 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2) 제한물질 수입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

(가) 제한물질 용도의 상세내역서 1부.

※ 제한물질 용도의 상세내역서에 제한물질 성분·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

(나)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사본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

(3) 유독물질 수입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4) 유독물질 수입신고서의 첨부서류

(가) 유독물질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예: MSDS자료, LOC(Letter of Confirmation), 성분내역서 등

나. 검토사항

(1) 신청서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가) 제한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를 영업허가증 등을 확인하여 판단

(나) 증명 서류의 제한 · 유독물질의 성분 · 함량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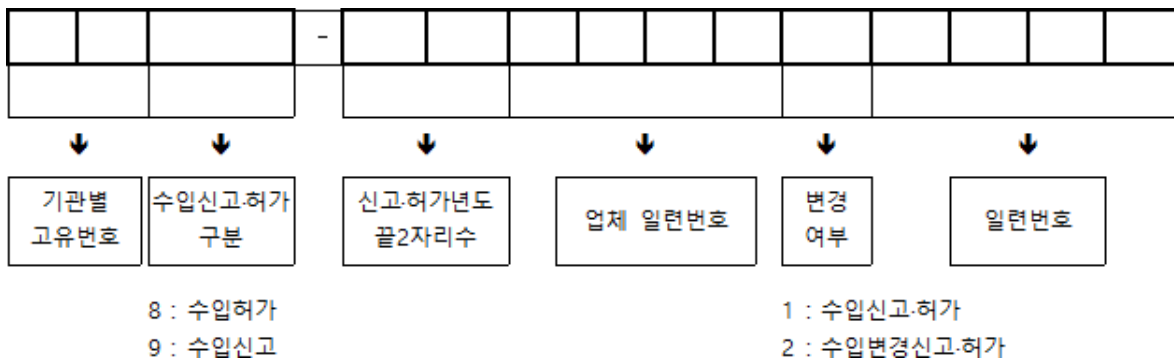
(2) 수수료 납부 확인

(가) 부과기준 : 유독물질 또는 제한물질 품목별로 부과

4. 허가증 및 신고증 교부

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제24호서식에 의한 허가 · 신고증 교부

(1) 다음의 방식으로 허가 · 신고 번호를 부여



5. 수입변경허가 및 수입변경신고

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1) 제한물질 수입변경 허가 대상

(가) 허가받은 제한물질의 종류 · 함량이 변경된 경우

(나) 허가받은 수입예정물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다) 보관 · 저장시설의 총 용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라) 허가받은 제한물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마)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변경신고)

(2) 제한물질 수입변경신고

(가) 사업장의 명칭 · 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3) 유독물질의 수입변경신고

(가) 신고한 유독물질의 종류 · 함량이 변경된 경우

(나) 신고한 수입예정물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다) 사업장 명칭 · 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변경되는 경우

(라) 용도가 변경된 경우

6.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및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가. 허가기간은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5년

나.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허가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의견 조회

- (1) 금지물질 사용·판매계획서 검토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금지물질 사용승인을 받은 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사용승인 업체에 판매하도록 조건을 부여

제4장 제한물질의 수출승인

1. 관련규정

가. 법 제21조

나. 시행규칙 제18조

2. 승인대상 수출물질

가.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이하 “로테르담협약”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

- (1) 로테르담협약 부속서Ⅲ 등재물질 중 산업용 화학물질
-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로 고시된 물질
 - ※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에 따라 업무추진

3. 수출 승인신청 서류 검토

가. 제출서류

- (1) 고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 수출승인 신청서
- (2) 고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출자 책임보증서
- (3) 고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출통보서(영문 2부)
- (4) 물질안전보건자료(영문 2부)
 - ※ 로테르담협약 부속서Ⅲ 등재물질인 경우 수출자 책임보증서만 제출

나. 신청서류 검토

- (1) 수출승인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수수료 납부 확인
 - (㉠ 해당물질에 대한 당해연도 최초로 수출하기 전의 수출승인 신청 여부인지를 확인
 - (㉡ 해당물질의 협약 부속서Ⅲ 등재물질 여부 및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제한물질 여부를 기재할 것
- (2) 수출자 책임보증서 확인
- (3) 수출통보서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수출상품에 포함된 해당 물질별로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함

4. 수입당사국의 수입의사 확인

가. 해당물질별 최초 수출전에 당사국 국가지정기관에 수출통보서 1부(MSDS 자료 첨부)를 송부

- (1) 동일 물질의 동일 국가 수출에 대하여는 매년 최초 송부한 수출통보서를 당해연도 수출통보로 갈음할 수 있음

나. 수출통보에 대하여 수입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이 수입 승인을 회신한 경우, 수입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이 수출통보를 면제한다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 또는 수입당사국이 수출통보서를 접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물질에 대한 수출승인서 교부

5. 수출승인서 교부

가.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승인서 교부

(1) 다음의 방식으로 승인번호 부여

			-						

↓

↓

↓

↓

기관별 고유번호

물질분류별 고유번호

허가년도 끝2자리수

일련번호

1 : 로테르담 부속서Ⅲ
등재물질

2 : 제한물질

(2) 정보시스템에 승인내용 입력

6. 수출승인 변경신청

가. 변경신청 대상

(1) 승인한 물질의 종류나 함량의 변경 : 수출승인서 상의 수출제품명(상품명) 또는 ‘ 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 함유 내역 ’ 에 기재한 함유량(%)의 변경을 말함

※ 승인한 물질의 CAS No.의 변경 또는 물질명칭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출승인 신청을 하여야함

(2) 승인한 수출예정 물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증가 : 수출승인서 상의 ‘ 당해연도 수출예정량 ’ 의 100분의 50이상이 증가한 경우로, 수출량이 시차를 달리하여 증가하였을 경우에는 총 증가한 양이 50%를 초과하는 예상시기 이전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3) 사업장의 명칭 · 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나. 변경승인 신청시기

○ 변경승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다만, 사업장의 명칭 · 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 한함.

다. 제출서류

(1)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변경승인신청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승인한 물질의 종류나 함량의 변경이나 수출예정 물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증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증가 내역서 및 신 · 구 비교도표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소재지가 변경된 사업장에 대한 등기부 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를 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서 직접 확인

(3) 수출승인서 원본

라. 신청서의 처리

(1)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변경승인서 교부

(2) 정보시스템에 승인내용 입력

예시) 2. 변경사항

일 자	내 용	기 재 자
'00.00.00. (변경승인일자)	1. 물질 종류 변경 가. 수출제품(상품)이 ○○에서 △△으로 변경 나. 수출대상화학물질이 ○○○에서 △△△으로 변경 2. 수출예정수량 증가 가. 당해연도 수출예정량이 기존 ○○톤(또는 ○○kg)에서 △△톤(또는 △△kg로 증가 3. 사업장 명칭의 변경 가. 기존 ○○에서 △△로 변경 4. 사업자의 변경 가. 기존 ○○에서 △△로 변경	○○○(인)

제5장 유해화학물질 관리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안전진단 및 개선명령

가. 관련규정

(1) 법 제24조, 제25조

(2) 시행규칙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신고

(1)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검사기관에서 설치검사를 받은 후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검사결과신고서에 설치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 검사기관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영업허가 대상은 매 1년마다, 영업허가 비대상은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은 후 별지 제36호서식의 결과신고서에 정기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하며, 수시검사를 받은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결과신

고서에 수시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 검사의 내용과 검사결과서의 작성방법 등은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참조

다. 안전진단 및 개선명령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는 설치·정기·수시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균열·부식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치·정기·수시검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행규칙 별지 37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 신고서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는 장외영향평가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장외영향평가서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고위험도는 매4년, 중위험도는 매8년, 저위험도는 매12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행규칙 별지 37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신고서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

※ 안전진단의 항목 및 방법 등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참조

(3)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1년간 정기검사를 면제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이 환경부 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또는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설치·정기·수시검사 또는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취급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을 명할 수 있음

2.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및 보고

가. 관련규정

(1) 법 제1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9조

(2) 시행령 제10조부터 13조까지

(3)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43조까지, 제54조

나.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1) 유해화학물질영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에 따른 관리기준 및 화학물질안전원장 고시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

(2) 유해화학물질영업자는 법 제32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시행령 제12조제2항제5호 중 “화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일반화학, 분석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물리화학, 생화학 등 화학 관련 교과목을 1학점 이상 취득한 자를 의미함

다.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 (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법 제16조, 시행규칙 제12조,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환경부고시) 및 국립환경과학원장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함

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동활용

- (1) 같은 부지 또는 건축물 안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2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영업자는 시행규칙 제42조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동활용을 신청
- (2) 승인 신청시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항 중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변경신고서 제출
-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관리자의 공동채용, 공동채용자의 관리, 공동채용자의 근무시간 등 규정을 확인하여 승인

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자 등의 실적보고 관리

- (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항과 영업자의 실적보고 자료 등을 비교·검토하여 무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미이행 및 실적보고 누락 또는 허위 보고 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함
- (2) 제한물질, 유독물질의 수입허가 및 신고 사항과 수입허가·신고자의 실적보고 자료를 비교·검토하여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영업자, 수입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실적보고 누락 또는 허위 보고 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함.
- (3) 실적 미보고 영업자, 실적 없는 영업자에 대하여는 실제 휴·폐업 여부와 유독물질 방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3. 유해화학물질 수입자 관리

가. 수입자 등의 사후관리 및 보고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현황과 관세청의 무역통계자료(통관내역) 및 수입신고·허가현황을 비교하여 수입신고·허가 및 변경신고·허가를 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한 자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 그 결과를 분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제6장 행정사항

1. 규제의 재검토

가.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